

# 철 강 대 학 원 학 칙

제정 2005. 9. 1    개정 2012. 6. 1    개정 2014. 3. 1  
 개정 2009. 3. 1    개정 2012.11.16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포항공과대학교 철강대학원(이하 “본 대학원” 이라 한다)은 철강관련 과학과 기술의 심오한 이론과 광범위한 응용방법을 교수 및 연구함으로써 전문지식을 갖춘 창의적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철강산업과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정) 본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 이라 한다)과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 이라 한다),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통합과정” 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학위수여 및 학위분류) ①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자가 석사학위 수여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각 학위는 전문학위와 학술학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학과 및 정원) ① 본 대학원에는 철강학과를 둔다.

② 철강학과의 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된 정원으로 한다.

## 제 2 장    입 학 · 편입학 · 재 입 학

제5조(입학시기) 본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지원자격) ①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 박사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7조(지원절차) ① 본 대학원의 각 과정에 입학할 지원자는 과정별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학전형을 치러야 한다.

1.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에 지원하는 자 : 입학지원서, 대학의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연구실적 및 연구계획서
2. 박사과정에 지원하는 자 : 입학지원서, 석사학위증명서 또는 석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석사학위논문 별쇄본
- ③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자가 통합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지원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학전형) ① 본 대학원의 입학에 필요한 전형은 아래와 같다. 다만, 총장은 필요에 따라 일부 전형을 면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전형할 수 있다.

1. 학력 및 학업성취에 대한 서류심사
2. 영어시험(비영어권 국가의 경우)
3. 전공구술시험(외국인의 경우 출신 대학 교수 2인 이상의 추천서로 대체할 수 있음)

②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가 통합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의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입학절차) 본 대학원에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편입학) ① 타 대학 교원이 본 대학원으로 전직함에 따라 그 지도학생이 본 대학원으로 편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편입학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생수는 해당년도 입학정원 내에 한한다.

② 전 소속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수업연한, 재학연한 등 제반 학사사항은 제13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삭제)

제11조(재입학)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이하 “대학원위원회” 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1. 학칙 제15조 제3항의 재학연한 초과자
2. 학칙 제15조 제4항의 제적의 징계를 받은 자

② 재입학자에 대하여는 종전에 이수한 교과내용을 참작하여 그 학점을 재 사정한다.

### 제 3 장 등록 및 학적변동

제12조(등록)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간 중에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필하여야 한다.

제13조(학생소속 변경) ① 본 대학에서 본 대학원으로 지도교수가 이직을 함에 따라 본 대학원으로 학생이 소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본 대학원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소속을 변경한 학생이 일반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수업연한, 재학연한 등 제반 학사사항은 이 학칙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재사정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 시행한다.

③ (삭제)

④ 소속을 변경할 학생이 일반대학원 통합과정에 재학 중일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만족할 시 박사과정으로 소속변경 할 수 있다. (신설: 2012.11.16)

1. 등록학기 3학기 이상
2. 석사학위 수료에 필요한 교과학점 이수
3. 평균평점 3.0 이상
4. 박사자격시험 합격

⑤ 통합과정 재학기간 내에 치른 박사자격시험의 결과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2.11.16)

제14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은 계속해서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석사과정에서는 3개 학기, 박사과정에서는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무 복무를 위한 군입대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5조(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했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된 학생은 당해학기의 등록기간 중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복학하여야 한다.

② 군제대 복학은 제대 후 1년 이내에 한하여 허가하며 군제대 일자가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일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가할 수 있다.

제16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보증인 연서의 자퇴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제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제적하고 이러한 내용을 본인 및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다음 학기에 복학하지 않은 자
2.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3. 재학연한 내에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4.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의 징계를 받은 자

제18조(재심청구) 제15조에 의해 제적된 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적통보가 도착한 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 4 장 수업 및 학점

제19조(수업일수) 수업일 수는 매학년도 30주 이상(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20조(교과과정)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학점의 조기취득, 과정간의 학점이월, 포항공과대학교(이하 “본 대학” 이라 한다) 및 타 대학 대학원의 취득학점인정, 학위논문의 탁월성이 인정되어 학위수여 요건을 조기에 충족시킨 학생은 수업연한을 통합과정은 1년, 석·박사과정은 각각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② 본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석사과정 3년, 박사과정 6년, 통합과정 7년으로 한다.

③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자가 통합과정에 입학할 경우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은 석사과정의 이수학기를 포함한다.

④ 각 과정별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학연한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회에 한하여 재학연한을 1년씩 총장이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상주재학) 최소한 석사과정의 학생은 2개 학기, 박사과정의 학생은 4개 학기를 상주 재학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과정의 수수료) ① 이 학칙 제24조의 수수료학점을 취득하고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B0(3.0)이상이며 박사과정에서 4개 학기 이상을 등록한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에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수료한 자로서 학위취득에 필요한 연구를 하는 연구생에게는 학생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24조(수수료학점) ①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은 석사과정은 28학점, 박사과정은 32학점, 그리고 통합과정은 60학점으로 한다.

② 각 과정에서 이수해야 하는 최저 교과학점은 석사과정은 18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

그리고 통합과정은 30학점으로 한다.

제25조(교과학점과 연구학점) ① 교과학점은 본 대학원에서 별도로 정한 교과과정의 과목을 통해서 취득한 학점을 말한다. 다만, 학사과정의 교과목을 수강하여 교과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400단위 과목 6학점에 한한다.

② 연구학점은 논문연구, 세미나, 실험실습 등의 연구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말한다.

제26조(학기당 취득학점) 본 대학원 과정의 학생은 연구학점을 포함하여 매학기 3학점이상 18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제27조(학점부여 기준) 교과학점은 1학기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논문연구, 세미나, 실험실습 등의 연구학점은 이에 준하여 따로 정한다.

제28조(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 ① 본 대학 학사과정의 학생이 본 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 또는 통합과정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의 학생이 박사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은 박사과정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의 각 과정에서의 인정범위는 각 과정의 졸업 및 수료를 충족시키고 초과한 학점에 한하되 소정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승인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9조(일반대학원 학점취득 인정) 본 대학원 학생은 본 대학 일반대학원(이하 “일반대학원”이라 한다)에 개설되는 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으로 취득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의 지도교수,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학기당 6학점을 초과할 수는 없다.

제30조(성적평가) ① 교과학점이 부여되는 과목의 성적은 시험성적, 과제물, 출석사항 등을 참작하여 부여하며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A+	A0	A-	B+	B0	B-	C+	C0	C-	D+	D0	D-	F
평점	4.3	4.0	3.7	3.3	3.0	2.7	2.3	2.0	1.7	1.3	1.0	0.7	0

② 연구학점이 부여되는 과목의 성적은 S(합격) 또는 U(불합격)로 부여한다.

③ 성적평가 자료가 미비할 때에는 잠정적으로 I(미완)의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제31조(학점인정 및 평점계산) ① D- 이상 또는 S를 받은 과목의 학점만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S학점은 평점계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2조(수강신청의 변경) 학생은 수강신청 정정기간 동안에는 지도교수, 대학원장의 승인

을 받아 수강신청을 변경할 수 있다.

제33조(수강포기) 학생은 개강 후 4주째부터 9주 이내에는 과목담당 교수, 지도교수,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을 포기할 수 있으며, 그 성적은 W로 처리한다. 다만, 3주 이내의 수강포기는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4조(추가시험)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때는 과목담당 교수 및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추가 시험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추가시험은 다음 학기 개시일 이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학점인정일수) 타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학생에게는 학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36조(재수강) 재수강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7조(타 대학 대학원 학점인정) ① 각 과정에 입학한 학생이 본 대학 이외의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정할 수 있다.

② 본 대학과 학점교류협정이 체결되었거나 총장이 인정하는 타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과정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8조(특별강좌) 본 대학원은 방학기간 중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 과정에는 특별강좌를 개설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제5장 비 학 위 과 정

제39조(공개강좌) 본 대학원에서는 교양 또는 학문연구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40조(연구생) ① 본 대학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특정과목 또는 연구과제에 수강 및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심사와 전형에 합격할 경우 연구생의 신분으로 수강 또는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본 대학원은 연구생에게 일체의 경비(수강료 등)를 부과하지 않으며, 연구에 참여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연구생으로서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는 별지서식 제1호의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 제 6 장 재정지원제도

제41조(재정지원제도) ① 본 대학원 학생에게는 장학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3.1.)

② 학생조교 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2조(장학금 이중 수혜의 금지) (삭제: 2014.3.1.)

## 제 7 장 징 계

제43조(학사경고) ① 매학기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B0(3.0)에 미달된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과한다.

② 재학기간중 2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제적할 수 있다.

제44조(징계) ①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한다.

② 징계는 근신, 정학(유기, 무기)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③ 모든 징계는 징계기간이 만료됨으로 해제된다. 징계기간 만료전이나, 무기정학자의 징계해제는 대학원장이 지도교수의 의견을 참작하여 대학원위원회에 징계해제를 청원한다.

## 제 8 장 대 학 원 위 원 회

제45조(구성) 대학원위원회는 본 대학원 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다만, 필요시 본 대학 교원중에서도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4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본 대학원의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본 대학원 학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본 대학원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본 대학원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5. 본 대학원 관련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6. 공개강좌와 연구생에 관한 사항
7. 대학원생의 상벌에 관한 사항
8. 장학금에 관한 사항
9. 대학원생의 정원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본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중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8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방법)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대학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장 학 위 수 여

제49조(학위수여) 본 대학원에는 공학석사와 공학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학위수여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심사위원) 전항에 의거하여 학위논문의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지도교수가 아닌 본대학의 전임교원을 학위논문의 심사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제10장 학 칙 개 정

제51조(학칙개정절차) 이 학칙의 개정은 사전공고 및 철강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제11장 준 용

제52조(준용) 이 학칙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대학원 학칙 및 제규정을 준용한다.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9월 1일부로 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로 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부칙 제1조, 제2조 3항 및 제3조 3항의 경과사항을 삭제하며, 이 학칙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6월 1일부로 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11월 16일부로 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생소속 변경 및 편입학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의 제10조 및 13조를 적용하며, 이 학칙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로 제정, 시행한다.

## 연구실적증명서

본 적 도

성 명

20 년 월 일생

이 이는 본 대학원 석사 학위과정에서 박사 년 월 간을 연구하여

그 실적이 양호하기에 이를 증명함.

20 년 월 일

포항공과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 ○ ○